

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3.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1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민원수수료 처리방법 개선 계획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나. 수입증지요금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다.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수입금 납입 (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용카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마.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청구 규정(안 제8조)
- 바. 기존 발행 수입증지 폐기 경과 규정(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2011.8월) 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방안」(2011.9월)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기 관리 책임자를 부서장으로 하고,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수입금은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제기 되어온

① 종이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발생,

②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③ 증지 구매시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제4조제1항1)에 근거하여 2011.11월부터 종이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1)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